

청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57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한경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5,15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1. 4. 5. 접수 제43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2002. 11. 13.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2명의 자녀(2003년생 및 2011년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2009.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2. 7.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충주시 D아파트 E동 제4층 F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원고가 C에게 2019. 7. 16. 3억 원(이자율 연 3%, 지연손해금율 연 24%)을, 2021. 1. 25. 2억 4,000만 원(이자율 0%, 지연손해금율 연 10%)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21. 4.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C은, 2021. 8. 4.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자녀들의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며 C이 피고에게 양육비로 미성년자녀 1인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은 2021. 11. 1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 5,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C은 원고에 대한 채무(5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상태에서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와 C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C은 피고 및 자녀들과 그대로 함께 살고 있는바, 이는 가장이혼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C이 설립한 법인(주식회사 G)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고, C은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2차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바, C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가입하여 보상받은 보험금과 피고의 친정 부모 및 형제들의 도움으로 매수하여 C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다. 이후 C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018. 4. 26. 이미 증여의 형식을 빌어 이를 환원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실제 이혼하였고, 위 환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자력 약화

1)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2차례에 걸쳐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총 5억 4,000만 원의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D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C에게 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5, 6,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3.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8,500만 원 상당이고, D 아파트의 시세는 8,200만 원 상당임을 알 수 있다. 위 시세 합계액은 앞서 인정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이 당시 원고 외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인 C의 자력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

가) 피고와 C이 2021. 8. 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1. 11. 12. 협의이혼을 신고를 마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협의이혼신고가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21.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합계 19,872,021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언니 H으로부터 2008. 4. 15. 1,000만 원, 2008. 5. 24. 100만 원, 2009. 6. 29. 500만 원, 2009. 9. 15.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 또는 C이 모친 I으로부터 2008. 10. 16. 300만 원, 2009. 9. 30. 120만 원, 2009. 10. 20. 및 2009. 10. 21.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언니 J으로부터 2009. 9. 4. 280만 원을 비롯하여 2009. 10. 20.까지 사이에 총 23,73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C의 등기부상 매매계약 체결 일자(2009. 11. 11.)와 인접한 시점에 송금받은 돈(H의 경우 최종 1,000만 원, I의 경우 최종 3,000만 원, J의 경우 2009. 10.경 받은 18,930,000원) 외의 다른 돈들의 경우, 송금받은 시점과 매수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 스스로도 매매계약일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2022. 3. 3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돈들이 모두 매수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전에 받은 돈의 액수는 전체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C의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 가족들은 C의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친정 가족들의 일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의 소득활동을 통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8. 4. 26.자로 증여계약을 작성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이는 실제 이혼에 나아가지 않기로 하면서 증여를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초사실과 앞서 본 사정들(재산의 형성 경위, 이혼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피고와 C의 경제적 능력, 재산상태 등)에 의하면, C은 피고와 이혼하면서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분할대상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와 C의 공동재산으로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D 아파트(C 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1억 8,500만 원 상당이며, 충주시 D 소재 아파트의 시세는 8,200만 원 상당이다. C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채무가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적정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피고와 C의 혼인생활 유지 기간, 가족관계, 소득활동을 C이 담당해 온 점, 피고가 친정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자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와 C의 재산분할비율은 각 50%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몫을 산정하면 1억 3,350만 원[= (1억 8,500만 원 + 8,200만 원) × 50%]이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된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은 1억 8,500만 원 상당이고, 이는 위 적정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을 5,150만 원(= 1억 8,500만 원 - 1억 3,350만 원) 가량 초과한다. 피고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나 책임의 경중을 판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C에게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C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성을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1억 3,350만 원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5,150만 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상회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5,1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